

#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58
----------	------

2017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성희 의원(찬성자 16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18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이성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을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민생활사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을 제외하고 관리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고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 기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 (2)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3)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의 범위, 신청, 심사, 대관허가의 제한, 대관료, 대관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 가. 조례 제정 개요

- 현재 서울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을 운영 중에 있고, 서울공예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이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운영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유일함<sup>1)</sup>.

특히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2012년 개관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었으나, 2015년 서울역사 박물관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한성백제박물관의 300석 규모 강당의 경우, 우리 위원회로부터 대관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최근에는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제정 의사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음.

그러나 한성백제박물관처럼 서울시 4급 기관에 속하는 9개 지구 중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명시한 독립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서울시립과학관' 뿐이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 당위성이 부족하고,

향후 생겨날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민생활사박물관, 서울로봇 박물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박물관별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서울시립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의 체계가

1)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가 2002년 3월 20일 제정되어 시행 중임.

자칫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운영 및 관리 체계가 유사한 ‘박물관’의 조례를 「서울시립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됨.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sup>2)</sup>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으로 통합적인 관리 규칙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립박물관 통합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의 운영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임.

---

2)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국립해양박물관법」으로 설립·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나. 조례안 개요

- 동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이성희(자유한국당, 강북2) 의원이 제안하였음.

### 〈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호 각 호를 준용한다.

-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각 공립박물관별로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송암미술관, 인천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로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등의 운영 조례를 각기 따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표 2〉 지자체 공립박물관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2002.3.20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2002.3.21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2003.7.31
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28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12.12.31
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2005.9.26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2004.2.28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2012.7.2
9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2010.12.31
10	강원도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2008.9.26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07.11.2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05.3.24
13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2004.5.13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감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2006.11.29
15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3.5
1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07.4.4

각 공립박물관별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통합 공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보다 많기는 하나 대다수 1개의 박물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여서 이러한 상황이 조례 제정 추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동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 연속성을 위해 대부분의 조항이 그대로 계승되었음.

또한, 부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상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음.

#### 다.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안 제1조), 제2장 운영(안 제2조부터 제9조),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안 제10조부터 제15조), 제4장 대관(안 제16조부터 제26조), 제5장 보칙(안 제27조부터 제29조) 및 4개의 부칙을 규정함.

〈표 3〉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사항 규정
제2장 운영		
제2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 개관 및 휴관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	관람료	박물관 관람료 무료원칙 등
제5조	관람료의 면제	관람료 면제대상

제6조	관람권	관람권의 발행 및 수표, 박물관 회원의 모집·운영
제7조	관람의 제한	박물관 관람의 제한
제8조	행위의 제한	박물관 내 행위의 제한
제9조	손해배상	박물관 전시물·시설의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0조	위원회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위원회 구성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회 기능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역할
제14조	위원회 회의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 세부사항
제15조	위원수당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4장 대관 등		
제16조	대관허가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 허가
제17조	대관범위	대관시설(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
제18조	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 신청 규칙
제19조	대관허가 심사	대관허가 심사 원칙
제20조	대관허가 제한	박물관 운영 취지 부적합 전시, 행사의 제한
제21조	사용시간	대관시설 사용시간의 원칙
제22조	대관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 대관료 징수
제23조	대관료 감면	대관료 감면 대상
제24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대관허가의 취소 및 장소사용 제한·정지
제25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박물관 시설·설비에 대한 주의의무
제26조	대관자의 책임	박물관 시설·설비 원상복구 및 책임
제5장 보칙		
제27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시행규칙	
부칙		

##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목적)은 동 조례의 목적을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 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하고 있음.

- 제2장 운영은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개관 및 휴관), 안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비롯하여 안 제7조(관람의 제한), 안 제8조(행위의 제한) 등 운영상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개관 및 휴관)은 박물관을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휴관일을 각 호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말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은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몰이 이른 동절기는 관람 종료시간을 오후 5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표시간은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관람 종료시간 1시간 전으로 하고 있음.

안 제4조(관람료)는 박물관의 관람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박물관 기획전시 및 대관전시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관람료의 면제)는 박물관이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고 있음.

안 제6조(관람권)의 경우, 시민들의 효율적인 관람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은 박물관 운영성과 향상과 시민들의 박물관 정보 접근 편의를 위해 박물관 회원의 모집·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료회원의 경우 문화정보지 SeMu 우송,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역사자료실 도서대출 및 편의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음.

〈표 4〉 서울역사박물관 멤버십 개요

구 분	유료회원	무료회원
연회비	연 10,000원	무 료
혜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보지 SeMu 우송</li> <li>· 서울역사자료실 도서대출(1회 3권)</li> <li>· 뮤지엄샵 및 카페테리아 10% 할인</li> <li>· 무료회원 혜택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교육 및 문화행사에 대한 메일링서비스</li> <li>· 프리뷰 초대(메일링서비스)</li> <li>· 박물관 문자소식</li> </ul>
가입방법	박물관에 연회비 납부	서울역사박물관 소식지 메일링 신청 혹은 문자신청
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안 제7조(관람의 제한)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① 술에 취한 자 및 ②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박물관의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나 판단이 성인에 비해

미약한 영유아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등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를 참고하여 제안된 조문임.

〈표 5〉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안 제8조(행위의 제한)의 경우,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당시 해당 조례안 제13조(제한행위)에서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명시되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조문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바, 안 제8조제1항제4호와 같이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한행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9조(손해배상)는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안 제10조부터 제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의해 박물관별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안 제10조(위원회)는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에서 2016년 7월 수립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로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음.

동 조례안의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안 제12조(위원회 기능)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관 및 시장 부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볼 수 있으나,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을 비롯한 문화본부(역사문화재과),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은 동 조례안의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의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규 위원회의 설치에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동 조례안의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안 제11조(위원회 구성)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과 비교적 유사하나, 같은 조제2항 위원의 임기는 기존 조례의 경우 연임규정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6년(2차례 연임)의 임기가 가능하였던 것에 비교해 2년 축소 변경된 것임.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박물관 관련 전문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박물관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조례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 차례”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표 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안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부터 제15조(위원수당)까지는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

다만 안 제14조(위원회 회의)제2항의 위원회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는 조문은 기존의 3일 전까지보다 앞당겨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것임.

〈표 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대관 등은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박물관의 전시실 및 부속시설의 대관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7조(대관범위)는 박물관의 대관시설을 기본시설(전시실)과 부속시설(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옥내·외 기타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대관허가 신청)과 제19조(대관허가 심사)는 대관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바, 대관을 받으려는 자는 안 제29조(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관시설 중 기본시설(전시실)의 경우 안 제12조 및 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박물관의 중심시설인 전시실에 대한 엄격한 콘텐츠 관리 의지를 반영한 것임.

안 제22조(대관료)의 경우, 대관자에게 대관시설 사용예정일 5일전 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함.

〈표 8〉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유료대관 현황

구 분	유료 대관시설	2016년	2017년(7월 기준)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광장, 시청각실, 야주개홀, 학습실	125건 (3,958만원)	206건 (978만원)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50건 (2,364만원)	33건 (1,614만원)

안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은 대관자가 대관시설을 사용할 때 박물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도록 하며,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6조(대관자의 책임)은 안 제25조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설비의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는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제5장 보칙은 안 제2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안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안 제29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7조(편의시설 설치·운영)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부설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해당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9〉 서울역사박물관 편의시설 현황

시 설 명	규모(㎡)	운영시간	임 대 료 (천원/년)	임대기간	임대업체
카페 및 식당 (1층)	218 (카페·구내식당·주방)	평일: 09:00~20:00 휴일: 09:00~18:00	123,777	'17.7.11~ '20.07.10	차용이 (디얼루어)
뮤지엄샵 (1층)	58	09:00~18:00	32,811	'15.12.9~ '17.12.8	박영희 (올리)
부설주차장 (후면외곽)	3,636 -114면(소형112, 대형 2)	08:00~22:00	507,500	'16.6.19~ '19.6.18	박지호 (지에스파크24)

〈표 10〉 한성백제박물관 편의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모(㎡)	운영방법	비 고
카페테리아	2층	263.32	임대(3년간) (2017.4~2020.4)	연간사용료 68,300천원
	지하1층	4.5		
뮤지엄 샵	지하1층	74.66	임대(3년간) (2017.5~2020.5)	연간사용료 25,998천원

제29조(시행규칙)은 박물관별로 상황에 맞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칙의 경우,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의해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폐지하며,

안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는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와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같음함.

또한, 안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운영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서울역사박물관과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법적 근거를 상실한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시립 박물관”으로 규정하고,

향후 설립·운영될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민생활사박물관, 서울로봇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경우, 의원발의로 ‘합의제 행정기구’ 성격의 위원회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 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설치된 운영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신규 설치라고 볼 수 없고, 집행부에서도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중 위원의 임기가 최대 4년으로 규정된 바, 박물관 관련 전문가 인력의 한정과 박물관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운영위원회 규정과 같이 최대 6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서 “한 차례”를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58
----------	------------

제안연월일 : 2017년 8월 31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수정이유

-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중 위원의 임기가 최대 4년으로 규정된 바, 박물관 관련 전문가 인력의 한정과 박물관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운영위원회 규정과 같이 최대 6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서 “한 차례”를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한 차례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b>한 차례</b>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u>위원</u>의 임기는 그 <u>직</u>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u>연임</u>할-----          -----          -----          -----.</p> <p>③ (제정안과 같음)</p>

#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운영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을 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람료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0.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

1. 매월 넷째 주 일요일
2. 설날, 추석, 어린이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날 이외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의 운영, 제17조제1호 기본시설의 대관,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한다.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장 대관 등

제16조(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옥내·외 기타공간

제18조(대관허가 신청)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관허가 심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한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2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
-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 1.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보칙

제2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2. 부설주차장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박물관별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